



**대 법 원**  
**제 1 부**  
**판 결**

사 건 2019다297083 임금

원고, 피상고인 1. 김형수

2. 유취안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

담당변호사 이환춘, 김두현, 송영섭, 권두섭, 김성진

피고, 상고인 1. 최창식

2. 주식회사 금강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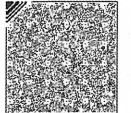
3. 주식회사 고강산업

피고 2, 3의 대표이사 최창식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

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나52123 판결

판 결 선 고 2020. 4. 9.



### 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### 이 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

대법관

이기택

이기택



대법관

권순일

권순일



대법관

박정화

박정화



주 심

대법관

김선수

김선수





# 정본입니다.

2020. 4. 9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오사롱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